#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37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서삼석・임호선・이기헌

염태영 • 이용선 • 박수현

윤준병 • 신정훈 • 이개호

문금주 · 문대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바다목장의 설치나 수산종자 방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는 절차(이하 "사전·사후영향조사"라 함)를 거치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전·사후영향조사 업무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사전·사후영향조사 수요로 인하여 해당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

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로 인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시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을 사전·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전·사후영향조사의실시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8항 신설).

#### 법률 제 호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관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행정관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전・사
	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
	<u>탁할 수 있다.</u>
	<u>1.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u>
	<u>수산자원공단</u>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
	<u>관</u>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
	된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
<u>④</u> ~ <u>⑥</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
	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사전・사
	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생 략)	<u>⑨</u> (현행 제7항과 같음)